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4731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768호	윤준병의원	2025.3.10.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9667호	정을호의원	2025.4.9.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9724호	김준혁의원	2025.4.10.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12285호	조정훈의원	2025.8.21.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5.9.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13936호	김문수의원	2025.11.5.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26.)
	제14025호	고민정의원	2025.11.7.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26.)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6.)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교육위원회(2025. 11. 27.)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교육세 구조 개편을 반영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구조를 현행 유아교육특별회계 편성 후 잔액의 50%가 편성되는 구조에서 금융보험업분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편성하는 구조로 개편하려는 것임.

또한, 그 외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 및 세출사항으로 명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교육세 개편에 따라 「교육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다.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과 세출 항목에 추가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 경비를 세출항목에 추가함(안 제5조).

라. 교육부장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선”을 “개선, 지방대학 육성”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지역 인재양성”을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6조제2항 중 “「교육세법」에”를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로, “교육세”를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로,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를 “예산액으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하고,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선, 지방대학 육성----------.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 3. (생 략)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제5조(세출)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5. (현행과 같음)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예산액으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제2조(유효기간) --------2030년----------

다.	-.